

의안번호	제 134 호
의 결 연 월 일	2022년 11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2년 10월 31일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용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
----------	-----

발의연월일 : 2022년 10월 31일

발 의 자 : 박용규, 김현문, 이정범,
박병천, 박재주, 유상용,
이윅희 의원

1. 제안 이유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과 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나. 지원계획(안 제4조)
- 다. 실태조사(안 제5조)
- 라. 교육 및 연수(안 제6조)
- 마. 홍보(안 제7조)
- 바.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 협력체계 구축(안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비용추계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체형 불균형을 예방하고 바른 체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척추측만 등과 같이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교육”이란 학생의 바른 체형과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형의 불균형적인 변화를 예방하고 불균형 체형을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3. 행정적·재정적 지원
4. 학부모·교직원 대상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학생건강증진계획에 학교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교육활동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을 위해 매년 학생 불균형 체형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효과적인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각급 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에서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 교육이 교육과정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학부모 대상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바른 생활자세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홍보할 수 있다.

제8조(위탁) 교육감은 전문적인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학교보건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2. 31., 2012. 3. 21., 2013. 3. 23.>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 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3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생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학교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학교의 장은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6. 3. 2., 2021. 3. 23.>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2. 3. 21.,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14.]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제1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를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③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고, 학생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건강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관리할 때에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인적사항

2.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3. 그 밖에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그 학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넘겨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 26., 2019. 12. 10., 2021. 12. 28.>

[전문개정 2007. 12. 14.]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12. 30., 2016. 12. 20.>

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2016. 12. 20.>

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본조신설 2007. 12. 14.]

[제목개정 2013. 12. 30.]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유아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과 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척추측만증 진단을 위한 검사비 및 이상자에 대한 상담료 등 소요경비

3. 관련조문

- 안 제4조(지원계획)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2027년까지 5년으로 하고,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음
- 척추측만증 검사 대상은 매년 초 6, 중 2학년으로 정하고, 1차 흉부 X-선 촬영을 실시하고, 이상자(검사대상자의 1.5% 정도 예상)에 대해 2차 경근 무늬측정검사(모아레)와 상담을 실시
- 연도별 검사대상수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학생수	27,810명	28,905명	27,543명	27,485명	26,447명	138,190명

나. 추계결과: 1,029,460천원

- 산출내역(흉부 X-선): 연도별 학생수×7,000원×1회
- 산출내역(경근무늬측정검사): (년도별 학생수×1.5%)×30,000원 ×1회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흉부X-선검사	194,670	202,335	192,801	192,395	185,129	967,330
경근무늬검사	12,510	12,990	12,390	12,360	11,880	62,130
계	207,180	215,325	205,191	204,755	197,009	1,029,460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100%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207,180	215,325	205,191	204,755	197,009	1,029,460	
척추측만증 검사(흉부X-선)	194,670	202,335	192,801	192,395	185,129	967,330	
정밀검사(모아레) 및 상담	12,510	12,990	12,390	12,360	11,880	62,130	
재원 조달	207,180	215,325	205,191	204,755	197,009	1,029,460	
의존 재원	소 계	207,180	215,325	205,191	204,755	197,009	1,029,460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207,180	215,325	205,191	204,755	197,009	1,029,460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